

의안번호	2218498
의 퇴 인	박민규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계번호	26B228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25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9조의26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지능형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지능형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으로 지능형주차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에 관하여는 제19조의20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은 “지능형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27 (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준용)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지능형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지능형주차장치 보수업, 지능형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사고 보고 및 사고조사, 지능형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지능형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2까지,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제19조의21부터 제19조의2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	의무규정
4	안 제19조의28 (지능형주차장 지원 시책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주차장의 보급을 통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1. 지능형주차장치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지능형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사업 3. 그 밖에 지능형주차장의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9조의25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9조의26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3	안 제19조의27 (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준용)	
4	안 제19조의28 (지능형주차장 지원 시책의 수립 등)	

2. 상세 사유

가.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준용(안 제19조의25 및 안 제19조의27 신설)

- 개정안은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지능형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지능형주차장치 보수업, 지능형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사고 보고 및 사고조사, 지능형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지능형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에 관하여 현행 기

계식주차장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해서는 현행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지능형주차장치의 종류, 설치 대수, 안전도인증 대상, 사용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의 대상 및 주기, 보수업 등록·관리 대상, 사고보고 및 사고보고 체계, 운행중지 명령의 적용 기준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지능형주차장의 정보망을 기존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기능개선하는 방식으로 구축할지,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할지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향후 ISP 수립 결과에 따라 표준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구축, 기존 정보망과의 연계 범위, 전국 확산 대상, 지능형주차장치의 설치 대수 및 검사 대상 규모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체 예산으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예산현황: 2024~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예정)
예산	운영	85	226	313
	유지보수	55	111	111
총 계		140	337	42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표 2]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전산 인프라 규모: 2024~2026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용자수(명)	대국민	10,996	22,837	27,361
	행정내부	65	73	73
서비스 파급도(개)	대국민	-	-	1
	행정내부	-	-	1
서비스 대체 수단		없음	없음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나.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안 제19조의26 신설)

□ 개정안은 지능형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지능형주차장의 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에 관하여 현행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사항임

-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관리인 배치, 교육, 안전관리 관련 행정처리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은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는 지능형주차장치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능형주차장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 원격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인 배치 규모, 원격관리 허용 여부 및 규모, 안전요건, 교육대상 인원, 교육방식 등이 불확정적이며, 현재 지능형주차장치의 설치 현황 및 향후 보급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리인 배치·교육 대상 규모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관리인 배치 및 교육 등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지능형주차장 지원 시책의 수립 등(안 제19조의28 신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주차장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지능형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별 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지능형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사업 계획이 불확정적이고, 정부의 지원 여부, 대상, 규모, 재정분담비, 지원기간 등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구체적인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7년 이후 지능형주차장치 연구개발 사업을 별도의 국토교통부 R&D 과제로 보급 활성화 이전 실증사업 등의 연구과제를 진행할 경우 필요 예산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표 3] 국토교통부 추산 지능형주차장치 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연도	예산 과제 수	과제당 평균 연구비	총 연구비
2027	2	18	36
2028	2	20	40
2029	2	22	44
2030	3	25	75
2031	3	28	84

주 1.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23~2032)에 따라 자율주행, 스마트모빌리티, AI기반 교통서비스 투자 등을 지속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 R&D 신규과제는 일반적으로 단위과제당 15~36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추산함

2. 본 추정치는 지능형주차장치 연구개발 사업을 별도 R&D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결과로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